



해양수산부

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국제기름오염방지증서(IOPP) 정기검사 조기시행 검토결과 알림

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「선박평형수관리협약 발효대비 업·단체 간담회('16.7.22, 거제)」 시 한국선주협회가 검토 요청한 'IOPP 정기검사를 HSSC(검사조화제도)와 분리하여 시행' 관련 아래와 같이 검토결과를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국제해사기구(IMO) 협약에서의 HSSC 적용 검토

- '00.2.3 발효된 HSSC의 주요내용은 1974 SOLAS, 1966 국제만재흡수선 협약, IBS CODE·BCH CODE·IGC CODE를 포함한 73/78 MARPOL과 관련된 증서의 검사조화제도임

① 모든 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함, ② 중간검사는 2번째 또는 3번째 연차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행하는 검사, ③ 연차검사는 매 연차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행하는 검사, ④ 여객선안전증서의 유효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함

- IMO 협약과 관련된 모든 증서를 동일한 날로 정해 실시해야한다는 규정은 아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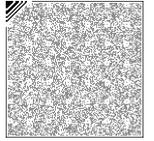
나. 국내법에서의 HSSC 적용 검토

- 해양오염방지설비의 최초 검사 후 5년 만기의 IOPP 증서를 교부하고 매년 제2종 중간 및 제1종 중간(2년차 또는 3년차) 검사를 실시, 증서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정기검사 후 IOPP 증서 재교부하나,
 - 선박소유자가 제1종 중간검사 또는 제2종 중간검사에 같음하여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제1종 중간검사 또는 제2종 중간검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음(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40조)
- 선주 요청으로 IOPP 정기검사를 증서 만료일 보다 3개월 이상 전에 받은 경우 검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유효기간이 5년인 새로운 IOPP 증서 교부 가능(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0조)

다. 검토결과

- IMO HSSC 및 국내법 검토결과 선주가 IOPP 정기검사 조기수검을 원할 경우 검사 가능하며 검사 완료일로부터 5년 기간의 새로운 IOPP 증서 교부
 - * 파나마, 마살아일랜드, 바하마, 세인트빈센트도 조기 검사 인정
- 다만, 타 협약 증서 정기검사 시 IOPP 조기 정기검사에 따른 검사주기 일치 유도.

끝.



해양수산부장관



수신자 한국선주협회, (사)한국선급,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, 뉴로베리타스(BV)

주무관	조경주	해양수산사무	관	정철락	과장	2017. 1. 3.
						김창균

협조자

시행 해사산업기술과-34 (2017. 1. 3.) 접수

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/ <http://www.mof.go.kr>

전화번호 044-200-5835 팩스번호 044-200-5299 / ckj0403@korea.kr / 비공개(5)

“ 클린오션(Clean Ocean), 국민의 꿈과 행복을 실현하는 해양수산부! ”